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1호서식]

안전인증기관 지정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60일

신청인	기관명	사업자등록번호
	대표자	전자우편
	주소	전화번호/팩스번호
신청범위	(필요시 별지 사용)	

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국가기술표준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1부 2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,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, 인력, 시험설비 등을 기록한 사업계획서 1부 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, 같은 법 제8조 및 제17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·방법 등을 기록한 업무규정 1부 4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.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(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)	수수료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」 제17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료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 (서류심사)	→	현장심사 및 결재	→	지정서 작성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	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	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	처리기관 (국가기술표준원)		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